

대구지방법원 2021. 2. 16 선고 2020가합202016 판결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재판경과

대구고등법원 2021. 10. 13 선고 2021나21938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2. 16 선고 2020가합202016 판결

전문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혜인

피고 1. 한국산업단지공단

2. 충북개발공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담당변호사 류제모

변론종결 2020. 10. 29.

판결선고 2021. 2. 16.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68,916,36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10.부터 2021. 2. 16.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산업지구[(C), 이후 D지구(E)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 F블록 공동주택 개발사업의 시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지구 조성사업의 시행자이다.

나. 피고들은 2015. 3. 31. 이 사건 사업지구 내 공동주택용지 F블록 95,7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에 관하여 분양공고를 하였고, 원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토지의 분양신청을 하여 2015. 4. 23. 위 토지의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5. 4. 30. 피고들과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78,445,818,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매매대금 및 대금납부방법)

- ① 갑(피고들을 말하며, 이하 같다)은 목적용지를 다음 표의 가격으로 을(원고를 말하며, 이하 같다)에게 매각하며 을은 매매대금을 다음 표에 따라 계좌입금의 방법으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매매대금 일금칠백팔십사억사천오백팔십일만팔천원정(₩78,445,818,000)

구분	납부약정일	납부할 금액
계약금(10%)	2015. 4. 30.	₩7,844,581,800
1차중도금(15%)	2015. 10. 30.	₩11,766,872,700
2차중도금(15%)	2016. 4. 30.	₩11,766,872,700
3차중도금(15%)	2016. 10. 30.	₩11,766,872,700
4차중도금(15%)	2017. 4. 30.	₩11,766,872,700
5차중도금(15%)	2017. 10. 30.	₩11,766,872,700
잔금(15%)	2018. 4. 30.	₩11,766,872,700

- ② 갑은 을이 사업준공일(또는 토지사용승낙일) 이전에 매매대금을 납부약정일보다 선납하는 경우 선납일수에 연 4.7%를 적용한 금액(선납할인액)을 할인하여 대금을 수납하기로 한다.

제3조(대상토지의 사용)

- ① 을은 대상토지를 지정된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조성사업을 위한 각종 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지구단위계획 등을 포함한 실시계획상의 건축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의 해제)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갑은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허위의 진술, 부실한 증빙자료의 제시, 담합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분양받은 경우
2. 소유권이전등기 전 대상토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공단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임대한 경우
3. 계약 후 중도금이나 잔금을 6개월 이상 지연한 경우
4. 을이 제8조 각호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갑으로부터 전액 즉시 변제의 요구를 받고도 14일 이내 그 이행을 하지 않은 때
5. 기타 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는 의무불이행이 있거나 계약의 순조로운 이행이 심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② 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을이 자신의 사정으로 스스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중도금을 일부라도 납부한 경우에는 갑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갑의 귀책사유로 토지사용시기 및 소유권이전이 6월 이상 지연되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단, 제6조에 의한 사유 등으로 지연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4조의 면적정산결과 확정면적이 100분의 15 이상 증감된 경우

- ③ 이 계약체결일 이후 갑 또는 을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의 순조로운 이행이 상당기간 지연되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은 협의하여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⑤ 제1항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갑은 을로부터 수납한 매매대금 중 계약보증금을 귀속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실제 납부일로부터 반환일까지 이자율(해약일 현재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을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제4항의 소유권회복비용 등 을이 부담할 비용은 갑이 을에게 반환하는 매매대금에서 이를 공제하기로 한다. 또한, 을이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한다.
- ⑥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갑은 을로부터 수납한 매매대금에 실제 납부일로부터 반환일까지 이자율(해약일 현재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반환하며 갑은 위약금으로 계약보증금 해당액을 을에게 지급한다.

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5. 4. 30. 계약보증금 7,844,581,800원을, 2015. 10. 22.부터 2017. 10. 24.까지 5차에 걸쳐 중도금 합계 58,592,804,112원(2015. 10. 22. 1차 중도금 11,757,846,058원 + 같은 날 2차 중도금 11,551,361,621원 + 2016. 10. 24. 3차 중도금 11,761,069,859원 + 2017. 4. 24. 4차 중도금 11,761,069,859원 + 2017. 10. 24. 5차 중도금 11,761,456,715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 조성의 준공이 늦춰짐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은 2018. 11. 14. 이 사건 계약상 잔금납부일을 2018. 4. 30.에서 2018. 12. 31.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토지 조성공사는 2019. 3. 29.경 준공되었다.

마. 이후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 피고들

및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대여한 대출기관인 G 주식회사1), H 주식회사는 2019. 8. 1. '원고가 납부한 매매대금 중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돈은 58,592,804,112원이며, 그 중 38,085,322,673원은 피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G에게, 나머지 20,507,481,439원은 피고 충북개발공사가 H에게 각 지급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중도금 납부액에 대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인 연 1.71%의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2019. 8. 5. G, H에게 원고가 납부한 중도금 상당액인 58,592,804,112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및 2019. 11. 29. 원고에게 위 중도금 납부액에 대한 이자 합계 2,888,775,722원(2,432,674,135원+456,101,587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3 내지 15, 22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계약은 제9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원고의 약정해제권 행사로 해제되었다. 위 조항에 기한 계약 해제 시 피고들에게 계약보증금이 귀속된다고 정한 이 사건 계약 제9조 제5항은 공서양속에 반하는 위약벌 조항으로서 무효이거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9조 제4호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또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된 데에는 피고들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들에게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키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계약 해제 일반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계약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들이 몰취한 계약보증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부당히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하므로 피고들은 위와 같이 감액된 부분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

원고와 피고들은 별도의 약정으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합의해제하였고 원고도 위 합의해제 사실을 자백하였다. 합의해제가 이루어진 경우 그 효력은 합의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원고는 피고들에게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 제9조 제5항의 효력이나 성격 여하를 떠나 원고는 피고들에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 제9조 제5항이 약관규제법에 위반된다거나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부당하게 과다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계약 해제의 성격

1)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이 사건 확인서는 '이 사건 계약 제9조에 의거 계약을 해제할 경우'를 전제로 작성된 것인 점, ② 이 사건 계약 제9조 제5항은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원고가 납부한 매매대금 중 계약보증금은 피고들에게 귀속되고 나머지 대금에 대하여는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가산하여 원고에게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확인서는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과 이에 대한 이자의 반환방법 및 이자율 등 원고의 약정해제권 행사에 따른 계약관계의 청산과 그 구체적인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달리 이 사건 확인서를 통하여 이 사건 계약 해제를 위한 새로운 합의가 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2019. 8. 9. 원고에 보낸 '계약 해제 및 채권반환 알림' 공문(을 제1호증)에는 이 사건 계약 해제사유로 '이 사건 계약 제9조 제2항 제1호'가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은 제9조 제2항 제1호에 기한 원고의 해제권 행사로 해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고가 2020. 6. 10.자 준비서면의 진술로써 이 사건 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들도 2020. 9. 10. 제3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고 주장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의 위 진술은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평가로서 사실에 관한 자백이 아니라 권리자백에 불과하다. 권리자백은 법원을 기속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으며, 원고가 2020. 10. 28.자 준비서면의 진술로써 위 권리자백을 철회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계약 제9조 제5항의 성격

이 사건 계약 제9조 제5항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피고들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원고의 사정으로 원고 스스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원고가 납부한 매매대금 중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고 계약보증금은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계약조항 문언의 취지와 제9조 전체의 체계,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제9조 제5항은 매수인의 귀책사유 또는 매수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있어서 그로 인한 원상회복 및 매수인의 손해배상의무에 대한 처리방법을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달리 위 계약보증금 귀속에 관한 조항을 위약벌 약정으로 볼 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상 계약보증금 귀속 외에 계약 해제에 따른 별도의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 해제 이후 원고에게 별도의 손해배상을 구하지 않았던 점 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계약 제9조 제5항을 위약벌 약정이라 볼 수 없고, 그 법적 성격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 제9조 5항이 공서양속에 반하는 위약벌 약정으로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약관규제법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1) 약관규제법은 제6조 제1항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들고 있으며, 제9조에서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을 들고 있으므로, 계약의 해제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다40131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 갑 제17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사업지구 내 토지에 관하여 다수의 상대방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예상하고서 미리 마련한 계약서 양식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계약 제9조 제5항은 위 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약관규제법 제2조 제1호의 약관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 제9조 제5항은 원고의 귀책사유 또는 원고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들에게 계약보증금이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피고들로 하여금 원고에게 계약보증금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 제9조 제5항이 귀책사유 여하를 불문하고 계약이 해제되는 모든 경우에 원고의 계약보증금에 대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포기하도록 정하고 있다거나 매수인인 원고에 대하여만 일방적으로 계약보증금 포기 조항을 두어 불공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계약 제9조 제5항이 원고의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정한 것으로서 불리한 조항이라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신의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7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 등 분양공고문에는 '지구단위계획 등을 확인하고 이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신청에 참가하여야 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었고, 위 공고에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이 첨부되어 있었으며,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상 이 사건 토지는 주택유형 85㎡ 초과, 평균면적 172㎡인 공동주택용지로 규정되어 있었던 점, ② 원고는 위와 같은 제한을 알면서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점, ③ 이 사건 계약 해제 후 피고는 동일한 주택규모의 공동주택용지로서 이 사건 토지를 재매각한 점, ④ 건설가능 주택유형이 85㎡ 초과에서 60㎡ 초과 85㎡ 이하로 변경된 이 사건 사업지구 내 공동주택용지 1블록의 경우 분양 입찰이 3회 유찰된 특수한 사정이 존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공동주택규모를 변경하여 달라는 원고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들의 책임으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계약의 해제로 원고가 큰 손실을 입었다거나 이 사건 토지를 재매각하여 피고들이 이익을 얻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보증금 몰취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마.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주장에 관한 판단

1)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과 경제상태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에 실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액의 크기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 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실제의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심리·확정할 필요는 없으나, 기록상 실제의 손해액 또는 예상 손해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예정액과 대비하여 볼 필요는 있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다84468 판결 등 참조).

한편, 토지의 매매계약이 매수인측의 귀책사유로 해제되는 경우에 매도인측이 입는 통상의 손해액은, 그 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고 이행된 경우에 매도인이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과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매도인에게 남아 있는 경제적 이익의 차액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에 매도인이 제3자에게 그 매매목적물을 다시 매도한 경우라면, 제3자에의 매도가격이 시가에 비추어 현저히 저렴하게 책정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당초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취득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매매대금과 제3자와 사이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취득하게 되는 매매대금과의 차액에 당초의 매매대금의 취득예정시기로부터 후의 매매대금의 취득시기까지의 기간 동안 당초의 매매대금에 대한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 상당액을 합한 금액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3543 판결 등 참조).

2) 위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20호증, 을 제3 내지 9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 제9조 제5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7,844,581,800원 전액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중 20%에 해당하는 1,568,916,360원을 감액함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토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부지이고, 공공기관 또는 공기업인 피고들과 원고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에 있어 양자의 경제적 지위나 계약보증금 결정 과정 등이 대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계약 해제로 피고들이 입은 손해는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재매각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80,591,000원과 당초의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상당액 3,449,368,106원을 더한 총 3,529,959,106원이다.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해제 후 약 10개월이 경과한 2020. 6. 5.경 주식회사 J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매매대금은 원고에게 매각한 대금보다 8,307,319,800원이 더 많은 86,753,137,800원이다. 따라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

해제로 인한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들의 이 사건 토지 조성공사 준공일이 기존의 2018. 4. 30.에서 2019. 3. 29.로 연기됨에 따라 원고의 공동주택 건축 및 분양 일정도 순차 조정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가 대출기관으로부터 조달하여 납부한 매매대금에 대한 금융비용도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결국 이러한 사정은 원고가 종국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을 하지 않게 된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라) 통상적인 매매계약에서는 위약금을 총 매매대금의 10%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를 이 사건과 같이 장래의 택지 조성을 예상하고 체결하는 용지공급계약인 이 사건 계약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

3)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하여 감액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약정 중 감액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처음부터 무효이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다31189 판결,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73852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2)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감액된 위약금 상당액 1,568,916,3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20. 3. 10.부터(피고들은 민법 제749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일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의제된다)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2.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욱도 판사 김미란 판사 노재승

1)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두 번째 지칭할 때부터 '주식회사'의 표시는 생략한다.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